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2. 7. 13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7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2년 7월 2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9회(임사회) 제1차 위원회(2002.7.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정진)

- 가. 개정이유
 - 병역법 개정으로 시·군·구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구 본청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
제5조(행정관리국) 제2항12호 병사에 관한 사항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민창규)

동 개정조례(안)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2항12호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중 “병사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종전 구에서 수행하던 병무 위임 업무가 병무청 소속으로 복귀됨에 따라 우리구를 비롯한 전 자치구가 동시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2. 7. 2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병역법 개정으로 시·군·구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구 본청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
제5조(행정관리국)제2항12호 병사에 관한 사항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시·군·구 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사무인계·인수지침
(서울지방병무청 총무 34060-614. 2002.6.10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행정관리국) 제2항 제1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5조(행정관리국) ① 생 략 ② 생 략 1~11 생 략 12. <u>병사에 관한 사항</u> 13~20 생 략	제5조(행정관리국)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~11 현행과 같음 12. <삭 제> 13~20 현행과 같음